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 오피스텔 분양광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66-1900)등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광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분양광고일(2026.01.15.)**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금번 공급분)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평촌롯데캐슬르씨엘.com>)를 통해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6.01.20.(화)	26.01.23.(금) 16:00 이후	26.01.24.(토)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 건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1)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경기도 안양시 [2025-건축과-분양신고-3호 (2025.10.27.)]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경기도 안양시 [2024-건축과-신축허가-10(2024.12.27.)]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16,846.10㎡
- 건축물 연면적 : 197,046.0124㎡
- 건축물 층별 용도 :

구 분	용 도
지하 5층 ~ 지하 4층	지하주차장, 열교환기실, 저수조, 소화수조, 기계실, 전기실
지하 3층	지하주차장, 전기실(판매시설), 발전기실(판매시설)
지하 2층	지하주차장, 폐기물보관창고, 커뮤니티시설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판매시설
지상 1층	커뮤니티시설, 판매시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상 3층 ~ 지상 19층	오피스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상 20층	피난안전구역, 펌프실, 소화수조, 헬룸실, EPS실
101동 지상 21층 ~ 지상 43층	오피스텔
102동 지상 21층 ~ 지상 47층	오피스텔
102동 지상 48층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103동 지상 21층 ~ 지상 33층	오피스텔
104동 지상 21층 ~ 지상 45층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5층~지상최고48층 4개 동, 오피스텔 총 900실 중 18실

• 주차대수 : 전체 1,310대 중 오피스텔 1,276대

■ 내진설계 등급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함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

- 최대지반가속도-0.197g
-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MMI)-Ⅶ

■ 입주예정일 : 2029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시행수탁사 : 코리아신탁(주), 시행위탁사 : 해조건설(주), 시공사 : 롯데건설(주), 분양대행사 : (주)델타코리아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본 사업은 시행사 겸 시행수탁사 코리아신탁(주)와 시행위탁사 해조건설(주) 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였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 2 -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호, m²]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18A	10	118.0718	55.5335	173.6053	77.5693	251.1746	21.5040
119A	7	119.7090	56.3036	176.0126	78.6450	254.6576	21.8022
119B	1	119.6637	56.2823	175.9460	78.6151	254.5611	21.7939
합계	18	-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별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m²) × 0.3025 또는 면적(m²) ÷ 3.3058)
※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동, 라인	층	공급 호실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물비	부가가치세	합계	1차	2차(잔여액)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30일 이내	2026.07.08.	2027.03.08.	2027.10.08.	2028.05.08.	2028.11.08.	2029.05.08.	
118A	102동 1호, 5호	3~5층	1	501,370,180	757,936,200	75,793,620	1,335,100,000	10,000,000	56,755,000	133,510,000	133,510,000	133,510,000	133,510,000	133,510,000	133,510,000	467,285,000
		6~10층	2	508,505,250	768,722,500	76,872,250	1,354,100,000	10,000,000	57,705,000	135,410,000	135,410,000	135,410,000	135,410,000	135,410,000	135,410,000	473,935,000
		11~18층	1	514,739,070	778,146,300	77,814,630	1,370,700,000	10,000,000	58,535,000	137,070,000	137,070,000	137,070,000	137,070,000	137,070,000	137,070,000	479,745,000
	103동 2호, 3호	6~10층	3	508,505,250	768,722,500	76,872,250	1,354,100,000	10,000,000	57,705,000	135,410,000	135,410,000	135,410,000	135,410,000	135,410,000	135,410,000	473,935,000
	104동 1호, 5호	3~5층	1	496,375,620	750,385,800	75,038,580	1,321,800,000	10,000,000	56,090,000	132,180,000	132,180,000	132,180,000	132,180,000	132,180,000	132,180,000	462,630,000
		6~10층	1	503,435,540	761,058,600	76,105,860	1,340,600,000	10,000,000	57,030,000	134,060,000	134,060,000	134,060,000	134,060,000	134,060,000	134,060,000	469,210,000
		11~18층	1	509,631,840	770,425,600	77,042,560	1,357,100,000	10,000,000	57,855,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474,985,000
119A	102동 2호, 4호	3~5층	1	505,313,190	763,897,100	76,389,710	1,345,600,000	10,000,000	57,280,000	134,560,000	134,560,000	134,560,000	134,560,000	134,560,000	134,560,000	470,960,000
		6~10층	2	512,448,260	774,683,400	77,468,340	1,364,600,000	10,000,000	58,230,000	136,460,000	136,460,000	136,460,000	136,460,000	136,460,000	136,460,000	477,610,000
	104동 2호, 4호	3~5층	2	505,313,190	763,897,100	76,389,710	1,345,600,000	10,000,000	57,280,000	134,560,000	134,560,000	134,560,000	134,560,000	134,560,000	134,560,000	470,960,000
		6~10층	2	512,448,260	774,683,400	77,468,340	1,364,600,000	10,000,000	58,230,000	136,460,000	136,460,000	136,460,000	136,460,000	136,460,000	136,460,000	477,610,000
119B	104동 3호	3~5층	1	508,129,720	768,154,800	76,815,480	1,353,100,000	10,000,000	57,655,000	135,310,000	135,310,000	135,310,000	135,310,000	135,310,000	135,310,000	473,585,000

- **공통 유의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 동,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 옵션(유상 옵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수분양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MDF, 종합방재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진입통로, 복도, 계단, 로비, 피난안전구역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위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실 타입 간에도 주동 구성에 따라 호실외벽 두께는 다를 수 있으며, 전체호실 벽체공용면적의 합계를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로 균등 배분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이하 단위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 사업부지내 공개공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1차, 2차로 분할 납부예정이며, 1차 계약금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불가(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수분양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상기 대출협약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는 대출 상환을 완료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통해 각 타입별로 접수합니다.
 - 본 사업 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광고일(2026.01.1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6.01.20.(화)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26.01.23.(금) 16:00 이후	26.01.24.(토)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1)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분		구비사항	
일반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01.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6.01.23.(금)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6.01.24.(토)	10:00~16:00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 건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1)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일정 및 방법은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304-241006	코리아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예금주는 코리아신탁(주)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상גיע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동·호수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 1차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 수납불가)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통 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분양사업장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대한민국 정부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본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우체국, 은행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제출)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금과 추가옵션계약서 상의 공급대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예시]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금 9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 7만 5천원 사업주체, 수분양자 각각 납부 추후 추가옵션계약서 상의 공급대금 2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면 합산한 금액 10억 1천만원에 대한 인지세 납부 기준에 납부한 인지세 7만 5천원에 인지세 10만원 추가 납부(수분양자 + 사업주체 총 35만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계약이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법인 계약시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계약이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위임장	계약자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계약자	본인발급용에 한함,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감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계약이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26.01.15.)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1차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수분양자 성명 및 호수를 기재(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로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대지 내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셔야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내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귀속됩니다.
- 당 사업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공급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 이후 추가선택품목의 별도계약이 있는 경우 기 신고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변경 또는 수정신고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제반 서류를 사업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공급계약서와 추가옵션계약서에 합산된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시행사)와 수분양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부동산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증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2024.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공급금액은 최초 오피스텔 분양광고 공급금액 이하로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수분양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수분양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 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예정입니다.
(단, 정부 정책 및 대출 기관의 사정, 수분양자의 금융기관 신용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수분양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수분양자의 대출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중도금 대출제한 및 대출이자 상승, 대출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수분양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중복수분양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명의로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가 본인의 재원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수분양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별개로 시행사 해조건설(주)가 수분양자 또는 권리양수인과 계약합니다.

1) 거실 벽 스타일업 특화

(단위: 원 / VAT포함)

선택형(유상)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세라믹타일 + 시트판넬 (거실세라믹타일 : 상부 H1700, 하부 H700)	118A	3,470,000	347,000	3,123,000	-
	119A	5,120,000	512,000	4,608,000	-
	119B	3,480,000	348,000	3,132,000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방 스타일업 특화

(단위: 원 / VAT포함)

선택형(유상)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주방 벽/상판 고급형 엔지니어드스톤 고급주방수전 미드웨이선반	118A	2,630,000	263,000	2,367,000	-
	119A	2,440,000	244,000	2,196,000	-
	119B	2,700,000	270,000	2,430,000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욕실 스타일업 특화

(단위: 원 / VAT포함)

선택형(유상)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욕실1 스타일업> 유럽산 욕실벽타일(600*600) 엔지니어드스톤 젠다이 하부벽 / 욕조 에이프런 비데 일체형 양변기,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고급세면기 수전 및 욕조수전, 코너선반, 고급악세사리	118A	7,300,000	730,000	6,570,000	-
	119A	7,300,000	730,000	6,570,000	-
	119B	7,300,000	730,000	6,570,000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욕실 복합 환기팬

(단위: 원 / VAT포함)

선택형(유상)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육실1, 육실2	118A, 119A, 119B	1,120,000	112,000	1,008,000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실1 대형 불박이장

(단위: 원 / VAT포함)

선택형(유상)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여닫이형 대형 불박이장	118A	3,900,000	390,000	3,510,000	-
	119A	4,250,000	425,000	3,825,000	-
	119B	3,930,000	393,000	3,537,000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실3 수납강화형 불박이장

(단위: 원 / VAT포함)

선택형(유상)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수납강화형 불박이장	118A	1,490,000	149,000	1,341,000	실2,3 통합형 옵션 선택 시 선택 불가
	119A	1,750,000	175,000	1,575,000	
	119B	1,490,000	149,000	1,341,000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대형 드레스룸

(단위: 원 / VAT포함)

선택형(유상)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대형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고급시스템가구 + 입식파우더)	118A	4,680,000	468,000	4,212,000	-
	119A	4,600,000	460,000	4,140,000	-
	119B	4,610,000	461,000	4,149,000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고급주방 장식장

(단위: 원 / VAT포함)

선택형(유상)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고급주방 장식장 (상하부 분리형)	118A	1,390,000	139,000	1,251,000	주방 스타일업 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
	119B	1,890,000	189,000	1,701,000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VAT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VAT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VAT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은행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추후 별도통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은 시공사 및 사업주체가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비용은 오피스텔 부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적용 및 설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본 분양광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계약 가능기간 안내), 1차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또는 변경 가능기간 이후 계약된 호실의 경우 선택품목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 및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발생시 동제조사의 동급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광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 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의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타입별로 상이하며, 구성내용 및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분양홍보물 표기에 한계가 있고, 분양사업장 건립호실에 전품목 전시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장에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안 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호실에 전시(일부)되오며, 설치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의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물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설치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스마트스위치, 기타 기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금액은 옵선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기본마감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상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설치 위치는 수분양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선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 시 제품 특성상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온/오프라인 판매가는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택품목 세부 유의사항]

※ 각종 추가선택품목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설계 유의사항 중 유상옵선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9년 10월 예정(구체적인 입주시정일은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시 재산의 하자보수책임,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분양계약서를 참고 바랍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

■ **일반사항**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규정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구 내의 부지로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각종 영향평가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지하철 등 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지하철, 병원, 문화편의시설 등)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X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부대복리시설 포함) 및 판매시설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 및 공유시설물을 공유합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전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 전체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수분양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명칭, 외부색채, 조형물, 공개공지 및 기타 계획 및 재료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 시공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설계변경(단, 경미한 변경 사항 제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며,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연면적 3%이상 변경 등)시에는 수분양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및 마감재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신종바이러스 등)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학교 배정은 관할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로 입주시점에 맞추어 학생배치, 통학여건 및 학부모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통학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며, 중학생 배정은 동안중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사업지 인근 민간 및 공공시설,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규정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현황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이나 신분증/등본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사업주체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와 관련된 사항을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실은 공사 시행 중에 별도 통보 없이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 불량거래자 등 수분양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납부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시 수분양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의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의 사유(담보대출불가 등)로 사업주체에 빠른 이행요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수분양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수분양자 손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 수분양자는 다음의 단지어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 ※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북측 도로의 폭은 45m이며, 서남측 도로의 폭70m입니다. • 단지 서측, 남측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고가도로)가 위치하여 있으며, 소음, 조망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앞 중앙에 위치한 용지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부지이며 단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 당 사업지 남동측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냄새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지하보도가 위치하여 있으며, 지하보도의 출입구는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보도와 공공기여시설을 잇는 연결복도가 당 사업지내 위치하며, 해당 연결복도는 단지 내 시설로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지하보도와 공공기여시설을 잇는 연결복도는 공공이 함께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임의 폐쇄할 수 없습니다. •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건축허가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수분양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는 건축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관련 분양홍보물(분양홍보물의 용어 정의는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참조)에 표현된 내용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공 및 분양 이후 건축허가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의건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 시에는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웬스설치	• 단지 외곽 경계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웬스를 설치할 수 없으나, 안양농수산물시장의 기존 웬스 구간은 공사 완료 후 시장측의 웬스 원복 요청이 있을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경계의 단차구간에는 안전을 위하여 일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웬스가 계획되어 있으나, 조경계획 및 인허가 협의, 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 설치되는 웬스의 위치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공공조경에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측에 차폐식재가 조성되며 별도의 웬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구역경계	• 단지 내외부의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난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난간 등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앞에 위치한 공공기여시설로 연결되는 구간에 계단 및 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기여시설의 계획변경에 따라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당 사업지간 레벨차 구간은 조경, 옹벽 등으로 조성되며, 실시공시 레벨차이, 옹벽의 종류, 위치, 범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2024년 12월 최초 건축허가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분양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진행에 따라 현장여건과 상품특화 및 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사전고지 않습니다.
마감재	• 단위실의 마감재는 평형 및 타입별로 디자인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타입에 맞춰 시공되므로 별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의 다른 사업장과의 마감 사양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추가 설치나 교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모델이더라도 조명, 각도, 시공 환경 등에 따라 색상과 디자인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마루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되며, 외관상 차이 또는 경미한 편차는 품질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자연스러운 무늬 차이와 색상 편차는 하자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 마감자재의 두께는 자재별로 상이하므로, 실제 안목치수가 도면상 치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설치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 특성에 따른 사항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관, 거실,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에 적용된 타일 마감의 나누기선 및 줄눈 위치는 형별·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하자 예방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시공 위치와 개소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자재 고유의 물성으로 인해 소량의 휨(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라믹 대형 아트월 타일은 자재 양종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실 디자인에 맞춰 커팅 시공되며, 이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호실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 특성상 제조 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줄눈 나누기 간격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 및 주방벽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 설치되며, 이에 따라 본 시공 시 연결 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위치는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거실 우물천장의 몰딩 디자인 및 디테일(규격 포함)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목창호의 형태, 위치, 열림 방향은 본 공사 시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침실 및 욕실 도어 등 목창호의 프레임 사이즈, 단차, 형태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안전을 고려한 설계이므로 설치 위치 및 작동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실 욕실, 다용도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계열(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다용도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 도장 마감에 적용되는 부위의 벽체 하부에는 오염 방지를 위한 투명 도장이 시공되며, 해당 도장의 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도어 후면 상부에는 벽체와 하드웨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형 도어 스토퍼가 설치됩니다.

	• 도어의 열림 특성에 따라 일부 도어는 벽체 및 하드웨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형 또는 바닥고정형 도어 스토퍼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 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 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됩니다.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 설치에 따른 음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간(현관, 복도, 거실, 주방)의 벽면과 천장은 도장마감으로 면의 텍스처가 일정치 아니할 수 있지만 공법 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 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인한 장시간 수분 노출 시 표면재의 변형, 하지 비틀림 등 우려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는 가구 이동 시 바닥 보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 디자인	• 당 단지의 주동 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커튼월록)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건축허가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사업주체의 결정,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본 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 ‘분양홍보물’이란,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견본주택의 사인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CG(광역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호실 평면도 등), 각종 광고, 홈페이지, 안내문을 총괄하는 용어로서, 이하 내용에서 ‘분양홍보물’이라 표현합니다. • 분양홍보물에 대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표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 시공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47A, 84A, 118A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 배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실 현관에 설치된 금속프레임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방화문틀과 방화문으로 시공됩니다. • 단위실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호실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 시에는 건축허가도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 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되며,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양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와 다른 용량(규격)의 제품을 수분양자가 설치할 경우,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 통신-제어기기 등은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되거나 동급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용 조명기구는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실 침실에 설치된 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관리가 용이한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위치와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에 안내된 우오수 배관, 선홈통, 수전,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보안용 CCTV, 소화기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지	공통사항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위치,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합니다.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오피스텔 주동과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도로 및 보행로 경사로의 선형 및 폭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동 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필로티 및 구조전이부 포함),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의 외부 입면은 석재 및 석재 뿔칠이 계획되어 있으며, 재료의 위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 호실은 단지 주변도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부대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소음, 조망,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전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옥상부 및 공공기여시설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에 준하여 태양광 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반사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위생 및 소화배관 등과 방지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수경시설은 조경용수로 공급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호실에 일조,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공공조경, 대지 외 공공기부채납시설, 휴게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산책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호실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거실의 창호가 분할창이 적용되므로 거실에 대해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우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 차로로서 우편물, 택배, 쓰레기 이송차량, 이삿짐, 구급 및 소방 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용 쓰레기집하장이 2개소로 102동 및 104동 지상 1층에 설치됩니다. • 102동과 104동에 쓰레기집하장이 설치되어 101동과 103동 입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집하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호실 및 입주민은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집하장의 위치와 크기, 호실과의 거리는 본 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103동 지하1층 판매시설 하역장 공간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103동 지하1층 출입 동선에 냄새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에 인접한 저층호실은 지상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실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 고정 IP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해당 구간 주동 외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는 유리난간 및 철제난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난간 위치 재질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현관 열림과 승강기 호출기능 외에 호실현관 제어 기능은 없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보안업데이트등 관리를 위한 무상기간이 3년으로 그 이후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1동 지상38층, 지상17층, 103동 지상17층, 102, 104동 지상38층, 지상17층, 지하2층, 지하4층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각 동 하부 지하층에는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각 동의 출입동선 및 부대시설은 소음 및 진동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전 관련 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화재시 소방차가 건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결송수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공사여건 및 소방차 진입 위치에 맞춰서 설치됩니다. • 소방성능위주설계에 따라 단지 내 통합방재실이 운영되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수거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기 및 방식은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릅니다. • 모든 동은 소방법에 의해 피난안전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 아래 층들은 각 호실 당 1개소씩 소방 진입창이 설치되며, 해당 창의 유리구성 및 창호의 형태는 동일 타입의 다른 호실과 상이합니다. 또한 소방 진입창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구조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 MMI Ⅷ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97(g)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전등설비 및 단지 입출차 차단기 전기사용 관련하여 전기계량 예정으로 판매시설, 입주민용 간 사용량 비율 규정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단지출입구	• 단지 차량출입구 2개소(진입1개소, 진출1개소)가 설치되며 인접 호실은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 소음,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는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시설의 차량의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의 주 보행출입구는 단지 서측 및 북측 공개공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동측의 비상차량을 위한 경사진입로는 경사도로 인하여 일반 및 장애인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남서측~단지중앙의 공공조경~단지북측 공개공지로 이어지는 동선은 공공보행통로로서 임의 폐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필로티	• 전체 주동은 1층 진입이 필로티 진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중간의 필로티는 비상차량의 통행을 위한 필로티로서, 차단 또는 적재물 비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104동 필로티에는 야외놀이터가 위치하여, 인접한 103동 3호, 104동 4호, 5호 라인의 저층호실은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냉방을 위한 실외기가 각동 필로티 구간에 설치가 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바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출입구	• 주동 하부 전동 필로티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출입을 위한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로티의 내·외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으며, 주동 출입구 의내·외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의 동출입구는 101동, 104동은 필로티 남측을 통해 이루어지며, 102동은 필로티 동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03동은 북측 판매시설 복도를 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전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출입구에서 필로티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동선이 다소 명쾌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동 배치 및 등에 따른 동선 계획이며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 필로티 내부 및 동출입구 주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호실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동	• BI 사인물은 위치 및 디자인, 크기는 분양홍보물을 참조하되, 본시공 시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관련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크기 및 위치, 개소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상1층, 지하1층에 부대시설에 계획되어 일부 저층호실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라인 옥상에는 소화수조가 위치하며, 하부호실은 소방시설 시운전 또는 화재시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2동은 건축계획상 인접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101동 4호라인은 조망 및 프라이버시 등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으며, 101동3호라인 및 102동1호라인은 프라이버시 등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에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해당 근린생활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서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호라인(118A타입)의 경우 48층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호실로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48층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하부층 호실은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3동 하부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일부 저층호실에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3동 5호라인 옥상에는 소화수조가 위치하며, 하부호실은 소방시설 시운전 또는 화재시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필로티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호실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3~4호라인 옥상에는 소화수조가 위치하며, 하부호실은 소방시설 시운전 또는 화재시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5호라인 동측과 104동 1호라인 서측에는 지상1층에 쓰레기수거차량 주차공간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층 엘리베이터홀(102동, 103동, 104동) 및 복도(101동)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지상층 전층에 배연창이 설치되며, 창호사이즈 및 채광정도는 상이합니다. • 각 동에 주차장환기(D.A), 발전기(D.A)가 설치되며 환기 및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호실에 소음, 매연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헬륨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헬륨 급기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호실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시공사 헬륨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각 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호실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20층은 제연헬륨, 펌프실,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으로, 해당층의 상하부층은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특성상 코어당 5호 또는 8호의 조합으로 연결복도가 형성이 되며, 해당 복도의 채광 및 환기는 제한적입니다. 계약전 해당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의 각 호실의 현관 앞 복도공간 크기는 호실의 위치별로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공간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개인물품 비치 등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인명구조공간 접근계단의 차폐루버는 101동, 103동에 설치되며 102동, 104동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 주동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허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 101동, 102동, 104동은 승용승강기(장애인용) 16인승 4대, 비상용승강기(장애인용) 24인승 1대, 피난용승강기(장애인용) 16인승 1대가 설치됩니다. • 102동에는 48층 스카이라운지(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의 승용승강기(장애인용) 21인승 1대가 설치되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11m 이내마다 비상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은 승용승강기(장애인용) 16인승 3대, 비상용승강기(장애인용) 24인승 1대, 피난용승강기(장애인용) 16인승 1대가 설치됩니다. • 동지하 엘리베이터홀 내부에 냉방용 EHP(냉방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전기세는 관리비 부과됩니다. • 지하5층 엘리베이터홀 내부에는 제습기 설치 되며, 가동시 전기세는 관리비에 부과됩니다.
외부코어	• 외부계단1는 102동 동측에 설치되고, 지상1층에서 지하5층 까지 연결되며,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외부계단2는 104동 서측에 설치되고, 지상1층에서 지하5층 까지 연결되며,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외부계단3는 103동 동측에 설치되고, 지하1층에서 지하5층 까지 연결되며,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외부계단4는 103동 서측에 설치되고, 지하1층에서 지하3층 까지 연결되며,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외부 엘리베이터는 103동 서측(지하연결통로)에 설치되며, 지하2층에서 지상1층 까지 운영되므로, 판매시설,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엘리베이터 및 계단5는 103동 동측에 설치되며, 지하2층에서 지상1층까지 운행되므로, 판매시설,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계단6는 101동 동측에 설치되고,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연결되므로,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	• 무인택배시설은 지상층 출입 방풍실 밖에 동별 1개소 설치 예정이며, 본시공 시 설치층 및 위치는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 오피스텔 1,276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34대로 계획(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 주차구역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 관청과의 협의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하여 주차대수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획 34대가 설치운영되며, 설치위치로 인하여 103, 104동에 접하는 주차면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5층까지 5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출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차량 진출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장애인용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은 최대 주차대수 확보를 목적으로 동별 배분되어 있지 않아, 각동마다 접하는 주차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전기차 주차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104동의 택배차량 진입은 주차장 지하1층이며,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단, 103동 우측 구간 제외이며, 주차면은 2.1m이상임)됩니다.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차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지붕 마감의 형태 및 디테일 등은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지하1~2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급속 16기, 완속 51기 설치예정으로 102동 지하1층 및 지하2층, 104동 지하2층에 설치예정으로 공사중 위치이동 될 수 있고 각동별 입주주민들간 사용거리가 상이합니다. •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장애인주차 폭 3.3m, 전기주차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시설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니다.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 호실은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지하 엘리베이터를 냉방용 실외기는 1층 필로티 및 조경공간에 설치 예정이며, 이와 인접한 호실은 소음 진동, 기류 발행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저수조실, 우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오수펌프실, 지열기계실, 열교환실, 환풍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 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자전거보관소, 필로티, 조경구간 측면 등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한 호실과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 열감, 연기 등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또는 사업주체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일부 호실의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 가구 및 장비배치 등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오피스텔 이용 시설물로 승인되었고, 오피스텔 시설물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입주 후 사용 및 운영방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스포츠존(피트니스클럽, GX, 골프연습장 등)이 101동 지하 1층,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외부계단을 통해 지상층 및 지하주차장과 연결됩니다. • 커뮤니티센터 에듀/패밀리존(독서실, 1인 독서실, 휴게라운지,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 취미실, 입주자회의실, 코인세탁실, 크리에이티브라운지 등)이 103동 지하 2층에 설치되며, 내부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층 및 지하주차장, 또한 지하 2층에서 연결되는 복측 신기대로 지하연결통로 및 공공기여시설로 연결됩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02동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외부로 통해 직접 출입합니다.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인해 인접한 저층 호실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운지는 102동 48층에 설치되며, 102동 북측면에 설치된 전용 엘리베이터로 지상 1층과 수직으로 연결되고 지하층과 연결되지 않으며 별도의 출입용 계단은 설치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스카이라운지는 인허가 조건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서 하부 호실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48층(스카이라운지,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및 복도, 화장실 등을 공유하며, 유지, 관리, 보수의 책임은 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에 있습니다. • 102동 48층의 공중정원을 제외한 외부공간은 유지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의 도서, 기타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매트류 제외) 및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의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 및 상하수도	•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 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주 및 경비실	•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중앙부 30m 통경축에 지상건축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는 사유로 문주형 구조물 대신 공개공지 인접구간 공간 특화가 계획되었습니다. • 경비실은 지하주차장 주출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의 크기 및 위치 등은 현장여건 및 동선개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호실	공통사항	•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수분양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 불가하오니, 계약 전 도면 및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진행중에는 공종별 공사 방법에 따라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법의 선정 및 변경은 시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다투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부 실시공 시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기본 제공 품목 및 옵션 품목은 상이하므로,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홍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호실 내 설계변경(구성, 설치위치, 마감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단위실의 안목치수는 기본 제공되는 마감재(거실 아트월 타일, 주방 벽 엔지니어드스톤)로 인해 추가되는 두께(치수)를 제외하여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 아트월 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드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미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일부 실은 공사 시행 중에 별도 통보 없이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천장고는 거실, 침실 기준 2.4M이며, 공간별로 다를 수 있으며, 바닥재에 따라 허용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깊이.형태는 천장 내부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및 구배,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으로 인해 도면상의 치수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은 무달대 TYPE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욕실·다용도실 등 단차부는 바닥구배 시공에 따라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침 방지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는 무관합니다. • 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다용도실 및 발코니는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비난방 공간입니다. • 다용도실은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사용 시에는 자주 환기를 시켜야합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 또는 조적벽 등) 접합부에는 크랙 방지를 위해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및 공용부 조명기구는 천장재가 처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 등으로 인해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에 천정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벽체, 천정 등에 설치되는 단열재, 결로방지용 단열재,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는 같은 호실 타입이라 하더라도 동별 위치 및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단열재,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의 종류, 두께는 본 시공시 동등 이상의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물을 사용하지 않는 피난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방수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에 따라 수분양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호실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입주시 호실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 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 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창문이 없는 타입의 다용도실에는 환기용으로 디퓨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1동 47타입 저층부 5개층은 공공기여시설(지상5층) 건립으로 채광 및 조망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118A-1타입의 35층~45층 호실은 드레스룸에 창문이 설치됩니다. • 기본제공되는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크기로 인하여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시 아랫단에서 세탁기가 다소 돌출됩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	• 47A, 84A, 119A타입은 실1 앞 발코니에 면하여 피난실이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84B, 84C, 96A타입은 실1 후면 드레스룸에 면하여 피난실이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118A, 118A-1, 119B타입은 주방/식당 측 다용도실에 면하여 피난실이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어 같은 타입이라 해도 설치 위치가 상이합니다. • 전층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상부층의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별도 마감 없이 노출됩니다. • 3층의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PIT층으로 내려오며, PIT층에서 수평이동하여 코어를 통해 피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 PIT층 하부는 전이매트 구간으로 별도의 하향식피난구가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피난실에는 물품의 적치 등 창고로 활용할 수 없으며, 피난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공품목	• 기본 제공품목 중 시스템에어컨, 드레스룸 천정형제습기, 빌트인 식기세척기,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사업주체의 직발주에 의한 공사 사항으로, 제공품목의 하자 및 해당 제공품목의 하자로 유발되는 마감재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시공사(롯데건설)와 무관합니다. • 각 호실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실 내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각 호실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물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위치에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타입별로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뉘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품목인 쿡탑은 상판 타공 치수로 시공되지만, 입주자 개별 구매 제품과 규격이 달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구공사	• 호실 타입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는 단위 호실의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 디자인, 내부 수납기능 등이 상이할 수 있음. 계약전 해당 호실의 가구 구성 및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는 옵션 품목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형 가구와는 구성 및 사양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및 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시공, 전기 배선 등과 연계되어 설치되므로, 설치 완료 후에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 아일랜드장은 가구 내 배선기구의 설치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며,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가구의 마감-규격-구성은 인허가 도서와 다를 수 있으며, 하자 방지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실제 사이즈는 마감재,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인해 도면상 치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 바닥, 배면 등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위호실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가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가구 하드웨어 및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문짝의 개폐방향은 입주자의 편의성과 사용성 개선을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 특성에 따른 사항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철재류는 녹 방지를 위해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칼리-산성 세제 사용 금지) • 욕실 거울은 자재 특성상(은 성분 포함) 산성 또는 알칼리성 세제나 습기에 민감하여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 가구의 색상, 규격, 형태 및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시공여건 및 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전기 및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공간은 구조적 또는 설치 여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 내부 구성은 본 공사 시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점검구 설치 및 안정기 매립 등을 위해 일부 공간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냉장고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의 뒷판 상-하단 엣지면은 마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정상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에는 별도의 물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재 및 구조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후드 상부 커버 몸체 내부에 자동식소화장치가 설치되며, 해당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 적용되는 필수 설비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온수분배기는 싱크볼 하부에 노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의 수납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수분배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싱크장 내부에 설치되는 가림판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돌로 구성된 팬트리 및 드레스룸의 가구도어 상부에는 환기겸용 도어스토퍼가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상부 이격설치가 기준입니다. • 기본형 및 옵션 선택 포함 시스템가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레이아웃은 시공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크볼은 재질 특성상 스크래치나 수분 자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날카로운 물체나 고온 조리기구 사용은 피하고, 강한 산성-알칼리성 세제 대신 중성세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세척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 부위는 시공 여건 및 마감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내 기본제공으로 적용되는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 개선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시공 시 호실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소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면 및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창호공사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 및 창호의 위치는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외기는 실내에 설치되며,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및 손잡이 위치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창은 실외기실 온도에 따라 작동되는 무전원 루버창으로, 사용자는 해당 작동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작동불가시 수동조작을 하여 실외기 가열에 따른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 층별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외부창호는 소방기준에 의거하여 각 호실 거실에 배연창이 1개소 설치됩니다. 해당 배연창은 기존 창호에 결합된 형태로서 소방신호에 의해 개방됨에 따라, 개폐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호의 유리는 일반복층유리(일반판유리+Air+일반판유리)로서 로이 및 아르곤가스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호실 내 목창호, 문틀 등에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창틀의 사춤은 결로방지를 위하여 단열성능이 있는 우레아폼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피난안전구역 하부 층들은 각 호실의 창호 중 1개소가 소방관 진입창으로 사용되어지며, 해당 창호의 유리구성 및 창호의 형태, 창호의 개폐방식, 개폐면적은 동일 타입의 다른 호실과 상이합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방관 진입창은 인허가 내용에 맞도록 유리 중앙에 진입창 표시 및 유리 타격점 위치가 표시가 되며, 이로 인해 조망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은 건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유사커튼월(건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알루미늄프레임 및 유리로서, 이하 '커튼월'이라 기재함)이 일부 구간에 설치됩니다. • 커튼월은 단지 전체의 미관 향상이 목적으로 같은 타입의 호실이라 하더라도 설치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커튼월의 유무가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커튼월은 창호개구부의 마구리면은 설치되지 않고 도장마감으로 시공되며,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외벽면 1면에 한하여 일부구간 커튼월이 설치됩니다. • 119A 타입 호실의 거실창 1개소는 입면분할창의 가로프레임 높이가 타 창호보다 높으며, 이는 소파 위치에서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하자가 아닙니다. • 47A타입의 일부 저층호실은 피난실에 소방관진입창(FIXED)이 설치되며, 해당 창호의 설치 유무가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은 47A 타입 외 전 호실에 3연동 타입 현관 중문이 기본 설치됩니다. (단, 84C타입 스윙형 중문 설치)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성능을 포함하지 않고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틈으로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5T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시 제조사, 규격, 하드웨어 사양, 컬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개폐 방향은 호실의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단위 호실 시스템 에어컨은 전실(4개소, 단 47A는 2개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본 공사시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견본주택의 설치 위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호실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됩니다. • 호실 주방배기 및 욕실배기는 역류방지 목적으로 당해 층 직접배기 방식으로 시공되어 인접 호실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 이용하여 난방 및 급탕 공급하고, 주방에는 하이브리드쿡탑(2+1H) 설치로 인해 가스 및 가스배관, 계량기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방우형콘센트 및 수전의 위치이동은 불가합니다. • 각층 호실 인접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계량기, 난방열량계, 통합배관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호실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피난실, 팬트리 등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호실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용 수전 및 손빨래수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마감 커버가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호실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에 따라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별도의 수직 배수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 호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호실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호실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 취득(육식 심야안전등 제외)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거실 직부등은 색온도 및 밝기 조절 가능)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호실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입주후 호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호실 수전(욕조, 레인샤워, 세탁, 손빨래, 발코니, 양변기 청소용수전 등, 욕실 악세사리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호실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저층부 또는 옥상에 판매시설의 주방용 송풍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에너지공급은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지역난방)는 지에스파워(주), 연료공급은 ㈜삼천리,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안양변전소 등에서 공급 예정입니다.
- 각 동 옥상 및 각 동 20층 피난안전구역에 소화수조, 소화펌프, 제연송풍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실에 소음 및 진동 등의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거실, 창고 및 드레스룸, 다용도실, 세탁실 등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의 위치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점검구가 해당 실의 천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각층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하부에 실외기 설치용 좌대가 설치 되며,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각층의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배기환, 공조기 등의 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호실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은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저층 일부 호실 소음, 미관저해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방에는 하이브리드 쿨탑[2I+1H] 설치로 인해 취사용 가스는 공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안정적 가스 전기 공급을 위해 공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 내 관련시설(정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통기관 등이 동 옥탑 및 상가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전동에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됩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호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주변 저층 호실에 일부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화장실 천장안에 상부호실의 배수 배관 등이 있으며, 유사시 해당 호실에서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 됩니다.
- 환기유니트는 가동시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실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 장치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운전소음이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84C, 96A, 118A, 118A-1, 119B 타입의 무창형 다용도실(세탁실)에는 호실 전열교환기의 배기 디퓨저를 설치하여 강제 배기가 되며, 전열교환기 ON/OFF를 통해서만 작동 됩니다.

			• 오피스텔 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호실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지역난방(통합배관시스템)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피난실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윗층 호실 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매립 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적용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 119A 타입의 경우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선택 시 다용도실의 천정재 설치 유무 및 천정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 상 옵 션	가전 기기류	• 빌트인 가전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 설치와 원활한 환기를 위해 후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며, 구조상 뒷부분이 벽면에 밀착되지 않으며, 이는 정상 시공 기준입니다.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은 수분양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제공되는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 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호실 배치에 따라 (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 위치)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의 도어 오픈 방향은 고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미 선택시 해당 위치는 기본 하부 수납장이 적용됩니다. • 주방 가전 추가 선택 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호실별로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내 기본제공품인 건조기능 일체 세탁기 사양 반영하여 방우콘센트 위치 적용예정으로 타제품(세탁,건조 2단적치 제품) 적용을 위한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마감재	• 타입별 마감 구성은 평면 타입별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건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라보일 수 있습니다. • 84B, 84C, 96A 타입의 옵션 세라믹 거실 아트월은 건립호실 84A 타입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 118A-1, 119A, 119B 타입의 옵션 세라믹 거실 아트월은 건립호실 118A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타일은 자재 고유의 물성으로 인해 소량의 휨(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라믹 대형 아트월은 타일은 자재 양중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호실 디자인에 맞춰 컷팅 시공되며, 이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타일은 자재 특성상 이음부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타일은 자재 특성과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패턴 연속성과 무관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트판넬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적용되는 타일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1,2 스타일업 옵션의 유럽산 벽타일은 건립호실 84A, 118A 타입에 기본형 마감재가 전시되어 있으니 옵션 선택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1,2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시 국산타일이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타일의 규격이 300X600으로 변경됩니다. • 본 공사시 타일패턴 및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바닥 타일과 벽 타일의 접합부, 욕실 선반과 벽 타일의 접합부 마감 티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류		• 타입별 마감 구성은 평면 타입별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서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가 건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 설치되며, 이에 따라 본 시공시 연결 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위치는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는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 배출을 위한 강제 배기 장치로, 사용 시 풍량 및 풍속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볼의 오버플로우 위치는 본 공사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는 호실의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 디자인, 내부 수납 기능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및 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시공, 전기 배선 등과 연계되어 설치되므로, 설치 완료 후에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 가구의 마감, 규격, 구성은 인허가 도서와 다를 수 있으며, 하자 방지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 바닥, 배면 등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 하드웨어 및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형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시스템가구의 선반 높이는 편의성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형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벽판넬형 시스템선반과 유리슬라이딩 도어(도어 공틀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실의 스위치의 위치가 조정됩니다. • 대형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조명, 환기, 제습기,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8-1A타입의 대형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벽판넬형 드레스룸, 시스템선반으로 구성되며, 실의 내부 창호 부위를 제외한 부위에 가구가 구성 됩니다. • 84, 96타입 실2,3 통합형 옵션 선택시 실3 불박이장 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84, 96타입 실2,3 통합형 옵션 선택시 환기,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8, 119타입 고급주방 장식장 옵션은 주방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적용 가능합니다.
		설비	• 84, 96타입 실2,3 통합형 옵션 선택시 서재와 복도 팬드리 바닥 난방은 1개조으로 구성되며, 개별 온도조절은 불가하며 동시 온도조절만 가능합니다. • 욕실 복합 환기 환은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기 환 선택시, 기본 제공 환기 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 환기 환 선택시, 점검구 및 조명 등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기 환은 같은 타입이라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정 환기시스템 옵션은 47타입 제외 전타입 선택 가능하며, 옵션 미선택시 기본 전열교환기로 설치됩니다. • 청정 환기시스템 옵션 선택시 84A, 119A 타입의 다용도실은 설비 덕트 설치로 천장 조성의 높이가 조정됩니다. • 주방스타일업 선택시 주방고급수전(주방살균수전) 설치를 위해 싱크장 하부에 전해살균시스템 박스가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수전 및 약세사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시설			• 단지 앞 공공기여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된 시설로서 경기도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 공공기여시설(기부채납)은 별도의 필지이며, 개별시설물이므로 대지지분을 포함한 모든 권리(소유 및 관리, 운영 등)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기여시설의 용도는 경기도 안양시 및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지역 공유시설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 및 관리주체를 설정하며, 입주민의 임의대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 단지중앙에 공공기여시설으로 연결되는 접근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접근로는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시설의 이용에는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이용료의 면제 또는 특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개공지			• 단지 내에 계획된 공개공지는 공공에게 개방되고, 볼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통행제한, 훼손설치 등의 전용화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의 포장, 시설물, 식재, 수경시설, 에스컬레이터 등 모든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공조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확보된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는 단지 외 일반인의 상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와 공공조경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식재계획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위치와 개소, 형태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연결통로			• 지하보도 연결통로는 단지 지하2층과 공공기여시설 지하3층으로 연결되도록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공공이 이용 가능한 단지 내 시설로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지하연결통로는 공공이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임의 폐쇄할 수 없습니다. • 지하연결통로의 레벨, 경사로 위치, 형식, 구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면 지하보도의 출입구의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및 기타사항			• 공개공지, 공공조경 및 외부휴게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호실은 소음 등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게 개방되고, 볼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이후 단지 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조정 시설물,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수분양자는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오피스텔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사업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해조건설(주)와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 및 시공사 롯데건설(주)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수분양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①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해조건설 주식회사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해조건설 주식회사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②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해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해조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③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해조건설 주식회사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④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해조건설 주식회사 또는 시공사 롯데건설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⑥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⑦ 위탁자 해조건설 주식회사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⑧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해조건설 주식회사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⑨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	소방/정보통신	전기
회사명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백에프앤씨	(주)한백에프앤씨
감리금액	3,265,130,000원	1,062,600,000원	805,31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110111-2937831
시행위탁자	해조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59번길 25, 1층 108호(비산동, Festa via)	134111-0183751
시공사	롯데건설 (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110111-0014764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델타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4, 8층 815호(농서동, 프리미엄원희캐슬 기흥서천)	134111-0467957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 본 사업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분양사업자인 해조건설 주식회사와 신탁회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자금관리신탁사") 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코리아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90081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주영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 건축허가사항 : 2024-건축과-신축허가-10(2024.12.27.)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잔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등기
- 분양대금관리자 : 코리아신탁(주)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용도, 규모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 지목 : 대
 - 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 5층 ~ 지상 48층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분양광고 및 분양사업장에 게시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 <https://평촌롯데캐슬씨엘.com>

■ 견본주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1

■ 분양문의 : 1866-1900

※ 본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